

# 대신대학교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8. 3. . 교무위원회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 라 한다)와 국내 기관, 교회 및 기업(이하 “대외기관” 이라 한다)과의 대외협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대외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각 처장, 외부영입인사를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.

③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④ 위원 중 외부 영입인사는 필요시 소정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간사는 대외협력단 부장으로 한다.

**제3조(임기)**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대외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
2. 대외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
3.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
4. 기타 대외협력교류 증진을 위한 활동

**제5조(회의)**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**제6조(자문위원)**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위원회의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대외협력단이 관장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